

문서번호	건강증진과-2687	주무관	건강도시팀장	건강증진과장	보건소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3.10.	한성숙	강태성	김영희	이인영	하철승	03/10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---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』  
**조례(안)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**

---

2016.3.9.

**강 북 구**  
**[건강증진과]**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』  
**조례(안)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**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백균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』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.

## I 조례(안) 개요

- 조 례 명: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- 발의일자: 2016. 3. 3.
- 발 의 자: 강북구의회 이백균, 강선경, 구본승, 김영준, 이정식, 장동우의원
- 제안이유
  -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로 인한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,
  -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 하며,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꽂초 무단투기를 줄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- 검토결과: 조례(안) 일부 수용

## II 주 요 내 용

- 금연구역중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도록 함 (안 8조제1항)
-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, 사유지내 흡연부스 설치시 지원, 외부기관이나 단체등과 협약을 통해 흡연부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2)

III

검 토 의 건

□ 조례개정(안): 일부 수용

조례(안)	검토의견	사 유
<p><b>제8조(흡연실 설치·운영)</b></p> <p>①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1호중 어린이놀이터, 제5조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</p>	<p>수용</p>	<p>○ 제5조제1항제4호(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)에 흡연실 설치·운영시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수용 적절함</p>
<p><b>제8조의2(흡연부스의 설치등)</b></p> <p>①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 할 수 있다.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이나 단체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불수용</p>	<p>○ 흡연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내에 흡연자를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.</p> <p>○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실외지역에 흡연실 설치하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.</p> <p>○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실 설치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서 사유지내 흡연실 설치를 지원할 근거가 미흡함.</p> <p>○ 사유지내 흡연실 설치지원시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평당 약 300만원으로 기존 공중이용시설내(특히 PC방, 음식점) 자비를 들여 흡연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의 설치지원 요청 민원발생이 예상되며, 따라서 구 재정 여건상 사유지내 흡연실 설치지원이나 외부기관과 단체 업무협약을 통한 흡연실 설치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부적당함.</p> <p>○ 다중이 이용하는곳에 흡연실의 설치하는 흡연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지역주민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금연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.</p> <p>○ 유동인구가 많은지역일 경우 흡연실 설치 장소의 부재와 설치후에도 불특정 다수가 24시간 이용함에 따른 유지·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.</p>

□ 타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

- 서울시: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 진행중
  - ※ 서울시 최판술의원 발의로 제8조 조례개정 진행중
- 중 구: 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개정(2015.12.23) - 제8조의2

붙임 조례안 1부. 끝.